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147 |
|----------|------------|

제안일자 : 2023년 9월 11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 관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기보다는 조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명시적으로 존치시키며,
- 안 제9조 관련하여 대리참석 가능한 공무원을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 및 결정권한을 가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등 의미 명확화 및 실정 반영을 위해 수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 나. 대리참석 가능한 공무원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9조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안 제7조제2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소속 공무원”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로 한다.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u>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u> <u>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u></p> <p>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 <p>제2조(정의)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u>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10. · 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p> | <p>제2조(정의) ----- ----- -----.</p> <p>1. ~ 8. (개정안과 같음)</p> <p>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u>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u></p> <p>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u>법 제3조제5호의 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u></p> <p>11. (개정안 제9호와 같음)</p> <p>12. · 13. (개정안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p> |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생 략)

<신 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
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2. (생 략)

3.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설>

4. (생 략)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하 “재난관리책임기
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하는 자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
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
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
성) ① -----
----- 맡고-----

맡는다.

② -----

-----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사람이 ---.

1.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
원장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자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
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

----- 사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생략)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있으며, -----
----- 담당
과장이 맡는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

② -----

- 통제관, 총괄지원관, --
-----.

1. (현행과 같음)

2. -----
-----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

- 업무 등을 -----.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 -----
-----.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신 설>

4. (생 략)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 9. (생 략)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 -----

-.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 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책임기관-----

5. ~ 9.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

-----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 9. (개정안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6조(재정지원) ① (생략)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56조(재정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제1항 중 “되고”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제5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이되고, 본부장은”을 “시장이 맡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을 “통제관, 총괄지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되며”를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로, “업무를”을 “업무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시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시의”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u></p> <p>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u></p> <p>나. <u>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u></p> <p>10. <u>“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u></p> <p><u><신 설></u></p> <p>11. · 12. (생략)</p> |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10. <u>“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u></p> <p>11. <u>“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u></p> <p>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p> |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략)

<신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
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1. 2. (생략)

3.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설>

4. (생략)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
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
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
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맡고----- 맡
는다.

②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사람이 -----.

1.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재
난관리책임기관-----

----- 사람

7. -----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
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
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생략)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
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
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
한다.

<신설>

4. 5. (생략)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
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

----- 있으며,
----- 담당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

② -----
----- 통제관, 총괄
지원관, -----.

1. (현행과 같음)

2. -----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
면서 -----
- 업무 등을 -----.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
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
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
제한다.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
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
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
을 총괄한다.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 9. (생략)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

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책임기관-----

5. ~ 9.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

----- 본부장,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